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64

발의연월일: 2025. 1. 13.

발 의 자:이병진・이기헌・권칠승

송옥주 · 이상식 · 주철현

양부남 • 이원택 • 박 정

윤후덕 · 정성호 · 소병훈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시의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 인 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특 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평택시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평택시는 향후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으며, 평택시를 거점으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분야의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택시에 국립학교인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평택시의 항만 인프라를 활용한 해양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평택시가 해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평택해양대학교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관을 변경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평택해양대학교를 지원·육 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 나. 평택해양대학교의 임원은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고, 총장은 평택해양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조직을 두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평택해양대학교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평택해양대학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 라. 평택해양대학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 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 마. 평택해양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제32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3조"를 "제64조"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 중 "이전"을 각각 "신설·이전"으로 한다.

제37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제68조(종전의 제3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 앞의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로 하고, 제33조의2를 제64조의2로 한다.

제5장(제32조부터 제6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평택해양대학교 설립 • 운영

- 제32조(설립 목적) 국가의 해양 분야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기술개발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학교인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한다.
- 제33조(법인) 평택해양대학교(이하 "평택해양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4조(설립) ① 평택해양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평택해양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정관) ① 평택해양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 ② 평택해양대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지원·조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평택해양대를 지원·육성하고 평택해양대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 제37조(임원) ① 평택해양대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⑤ 이사장은 평택해양대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⑦ 감사는 평택해양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38조(총장) ① 평택해양대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평택해양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

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 제39조(이사회) ① 평택해양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중요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0조(평의원회) ① 평택해양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3. 교원 · 직원 · 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 4. 평택해양대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 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평택해양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평의원회의 의장·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 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제41조(사업연도) 평택해양대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2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평택해양대의 시설·설비, 연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평택해양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43조(국·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평택해양대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국유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② 국가는 평택해양대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평택해양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평택해양대의계약으로 정한다.
- 제4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평택해양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

- 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평택해양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 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 업무
- 제45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평택해양대는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 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 담하게 할 수 있다.
- 제46조(기부 등) ① 평택해양대에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평택해양대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있다.
 - ②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수익사업 등) ① 평택해양대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평택해양대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48조(기금의 설치 등) ① 평택해양대는 해양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기금운용 수익금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1. 해양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 2. 대규모 교육시설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
 -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교원 및 연구원) ① 평택해양대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 ② 평택해양대에 해양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평택해양대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 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교원의 임면) ① 평택해양대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 ② 평택해양대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있다.
 -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총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한다.
- ⑥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 ①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2조(교원인사위원회) ① 평택해양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3조(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연구·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54조(학위과정 등) ① 평택해양대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 ④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해양대의 국제교류

- 협력 활성화 및 교육 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55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전문석사 ·석사·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 제56조(학생) ① 평택해양대의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과정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해양대 학생을 창의 적 해양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 제5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평택해양대가 아닌 자는 평택해양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8조(비밀유지의 의무) 평택해양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9조(민법의 준용) 평택해양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0조(벌칙) 제5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1조(과태료) ① 제57조를 위반하여 평택해양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평택해양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종전의 제3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제64조의2(종전의 제33조의2)제1항 중 "제33조제1항"을 "제64조제1항" 으로 한다.

제66조(종전의 제35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7조(종전의 제36조) 중 "제32조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종전의 제39조)제1항 중 "제37조제1항"을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에 관한 특례) 평택해양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후의 적용 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제

32조부터 제62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설립 준비 중인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의 설치) ① ~ ③ (생 략)	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4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32조</u> 의 규정에 의한 지역	4. <u>제63조</u>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5. <u>제33조</u> 의 규정에 의한 이주	5. <u>제64조</u>
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26조(학교의 <u>이전</u> 등에 관한	제26조(학교의 <u>신설·이전</u> 등에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ㆍ	관한 특례) ①
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	
유발시설중 학교를 평택시에	
<u>이전</u> 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u>신설·이전</u>
허가 • 인가 • 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u>.</u>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2
의 <u>이전</u> 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u>신설ㆍ이전</u>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u><신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

 제5장 평택해양대학교 설립·운

 영

제32조(설립 목적) 국가의 해양 분야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 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 와의 교육·연구·기술개발 교 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해양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국립학교인 평택해양대학 교를 설립한다.

제33조(법인) 평택해양대학교(이 하 "평택해양대"라 한다)는 법 인으로 한다.

제34조(설립) ① 평택해양대는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평택해양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정관) ① 평택해양대의 정 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 평택해양대가 정관을 변경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지원·조정 등) 해양수산 부장관은 평택해양대를 지원· 육성하고 평택해양대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 제37조(임원) ① 평택해양대에 이 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⑤ 이사장은 평택해양대의 총 장을 겸할 수 없다.
-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 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⑦ 감사는 평택해양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38조(총장) ① 평택해양대에 총 장을 둔다.
 - ② 총장은 평택해양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

- 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 <u>⑥</u>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 제39조(이사회) ① 평택해양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 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 한 사항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사항
 - 7.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u>⑤</u>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0조(평의원회) ① 평택해양대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 다.
 -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 <u>항</u>
 -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관한 중요한 사항
 - 3. 교원·직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 4. 평택해양대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 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 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평택해양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 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 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 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관으로 정한다.

제41조(사업연도) 평택해양대의

<신 설>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 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은 평택해양대의 시설·설비, 연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평택해양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국·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평택
해양대의 설립·운영 등을 위
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국
유문화유산은 제외한다.

② 국가는 평택해양대의 설립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 고 평택해양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 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 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평택해양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평택해양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 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 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평택해양대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 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

<신 설>

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 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 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 받은 연구업무

제45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평택해양대는 연구생산성의 향 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 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담하 게 할 수 있다.

제46조(기부 등) ① 평택해양대에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 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 간 평택해양대와 이를 공동으

<신 설>

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 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 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7조(수익사업 등) ① 평택해양 대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 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 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평 택해양대의 운영과 연구에 충 당하여야 한다.

제48조(기금의 설치 등) ① 평택 해양대는 해양 과학기술의 연 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기금운용 수익금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입금

<u><신</u>설>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1. 해양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 2. 대규모 교육시설 · 연구시설의 설치 · 운영
-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교원 및 연구원) ① 평택 해양대에 교원으로서 교수·부 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 ② 평택해양대에 해양 과학기 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제50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u> 획의 수립 등) ① 평택해양대

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 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1조(교원의 임면) ① 평택해양 대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 ② 평택해양대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총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있다.

제52조(교원인사위원회) ① 평택 해양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 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신 <u>설></u>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 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 관으로 정한다.

제53조(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산학 협력 및 기 여 봉사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 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 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 에 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4조(학위과정 등) ① 평택해양 대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 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신 설>

<u>따라 총장이 정하고, 해양수산</u> <u>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u> <u>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 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④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해양대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교육·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제55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전 문석사·석사·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56조(학생) ① 평택해양대의 박 사·전문석사·석사·학사과정 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 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 이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u><신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다.

②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해양대 학생을 창의적 해양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평택해양대가 아닌 자는 평택해양대학교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제58조(비밀유지의 의무) 평택해 양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 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민법의 준용) 평택해양대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벌칙) 제5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 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61조(과태료) ① 제57조를 위반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신 설>

(생 략)

제33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생 략)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① 평택시등의 장 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 책으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 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하여 평택해양대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 양수산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 다.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평택해양대의 임직원은 「형법」_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삭 제>

제6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63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현행 제32조와 같음)

제64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현 행 제33조와 같음)

제64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① -----

--제64조제1항-----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u>제34조</u>(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생 략)

- 제35조(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 고용 등) ① 주한미군기지 이 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 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u>제32조</u>의 규정에 의한 지역 주민편익시설 등 주한미군이 전에 따라 평택시등에서 시행 되는 시설사업
 - ② (생략)
- 제36조(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등 주변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은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차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현행 제34조와 같음)
제66조(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
고용 등) ①
1 0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63조</u>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
원) <u>제63조제1항</u>

등지원할 수 있다.

<u>제6장 보칙</u>
<u><신 설></u>

<u>제37조(</u>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생 략)

<u>제38조(청문)</u>(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동조동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